

1. 개정 이유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 이유

그동안 불법으로 설치해 오던 입간판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합법화하여 제도권내로 흡수하고,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수수료 신설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특례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신설(제6조)

나. 입간판 신고수수료 신설(안 제28조 별표4)

다.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수수료 신설(안 제28조 별표6)

라. 기타 시행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및 자구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5. 10. . ~ 10. .)

2) 규제관련

3) 부패영향평가

4) 성별영향분석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등)”을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로 한다.

제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

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4호 전단 중 “종료한”을 “종료된”으로 하고, 제11조(중전의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3조(중전의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을 “옥외광고

·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국어· 디자인· 조명”을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국어· 디자인· 조명· 청소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에 위원회의”를 “위원회에”로 한다.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관리과장”을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임기를 적용한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제3항 중 “화상회의”를 “전자(SNS)”로 하고,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며, 제16조(중전의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고, 제24조(중전의 제23조) 중 “1과”를 “2과”로 하며, 제26조(중전의 제25조)제1항 중 “2와”를 “3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으로, “증명서류”를 “증빙서류”로 한다.

제27조(중전의 제26조)제5항 중 “실시 할 경우에는”을 “실시한 때에는”으로 하고, 제28조(중전의 제27조)제1항제1호 중 “3과”를 “4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4와”를 “5와”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5와”를 “6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구청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제29조(중전의 제28조) 중 “6과”를 “7과”로 한다.

제6조의 별표 1과, 제28조 별표 4의 제13호, 제28조 별표 6의 나를 신설한다.

- “별표 2”를 “별표 3”으로, “별표 3”을 “별표 4”로, “별표 4”를 “별표 5”로, “별표 5”를 “별표 6”으로, “별표 6”을 “별표 7”로 한다.

[별표 1]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황(제6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	개수 (면수)	규격(m) (가로×세로×높이)	주 소	이격거리

[별표 2]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4조 관련)

광고물 등	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면적 20㎡ 이상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이하	3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0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6.1㎡ 이상 7.0㎡ 이하	69만원
- 7.1㎡ 이상 8.0㎡ 이하	79만원
- 8.1㎡ 이상 9.0㎡ 이하	8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11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3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5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7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2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에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30만원
- 0.6㎡ 이상 1.0㎡ 이하	35만원

- 1.1㎡ 이상 2.0㎡ 이하	40만원
- 2.1㎡ 이상 3.0㎡ 미만	49만원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59만원
- 3.6㎡ 이상 4.0㎡ 이하	69만원
- 4.1㎡ 이상 4.5㎡ 이하	85만원
- 4.6㎡ 이상 5.0㎡ 미만	99만원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119만원
- 6.1㎡ 이상 7.0㎡ 이하	139만원
- 7.1㎡ 이상 8.0㎡ 이하	159만원
- 8.1㎡ 이상 9.0㎡ 이하	17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199만원
4) 연면적 10㎡ 이상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에드벌 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30만원
- 2.0㎡ 이하	35만원
- 2.1㎡ 이상 3.0㎡ 이하	40만원
- 3.1㎡ 이상 4.0㎡ 이하	49만원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59만원

- 5.0㎡ 이상 6.0㎡ 이하	69만원
- 6.1㎡ 이상 7.0㎡ 이하	79만원
- 7.1㎡ 이상 8.0㎡ 이하	89만원
- 8.1㎡ 이상 9.0㎡ 이하	99만원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119만원
- 10.1㎡ 이상 12.0㎡ 이하	139만원
- 12.1㎡ 이상 14.0㎡ 이하	159만원
- 14.1㎡ 이상 16.0㎡ 이하	179만원
- 16.1㎡ 이상 18.0㎡ 이하	199만원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219만원
- 20.0㎡ 이상 25.0㎡ 이하	239만원
- 21.1㎡ 이상 30.0㎡ 이하	249만원
- 30.1㎡ 이상 35.0㎡ 이하	269만원
- 35.1㎡ 이상 40.0㎡ 이하	289만원
- 40.1㎡ 이상 45.0㎡ 이하	299만원
- 45.1㎡ 이상 50.0㎡ 미만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5) 연면적 50㎡ 이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공중에 띄우는 에드벌룬	
- 에드벌룬(공) 1개	40만원
- 에드벌룬(공) 2개	60만원
- 에드벌룬(공) 3개 이상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 · 조명탑 · 안내탑 · 일기 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40만원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50만원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60만원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70만원
- 연면적 21㎡ 이상	8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단, 100만원 이하)
2) 교통안내소	가로형 간판에 준함
3) 안내계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200만원
- 연면적 11㎡ 이상	2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단, 500만원 이하)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20만원
- 2.1㎡ 이상 3.0㎡ 미만	29만원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39만원
- 4.1㎡ 이상 5.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5㎡ 이상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 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 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

[별표 3]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5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자 (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별도 정함	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별표 4]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제2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원)

구 분	단위	기 준	수수료
광고물의 종류	개 m ²	면적 6m ² 이하	4,000
		면적 6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
1. 가로형 · 세로형 간판 가. 일반형 간판 (가로형 · 세로형 간판) 나. 4층 이상의 벽면 간판 (시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4호)	개	면적 5m ² 이하	5,000
		면적 5m ² 초과 10m ² 이하	20,000
	개 m ²	면적 10m ² 초과 20m ² 이하	40,000
		면적 2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4,000
2. 돌출간판	개	연면적 1m ² 이하	10,000
		연면적 1m ² 초과 3.5m ² 이하	20,000
	개 m ²	연면적 3.5m ² 초과 10m ² 이하	30,000
		연면적 1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
이·미용업소 표시등 및 의료기관 · 약국 표시등	개	(1면의 면적이 1m ² 미만인 것에 한정함)	
			5,000
3. 공연간판 가. 신규 기간연장 그 밖의 변경 나. 내용변경	개 개	해당 광고물(벽면 · 지주)에 준함	
4. 옥상간판	개	연면적 10m ² 이하	50,000
		연면적 10m ² 초과 20m ² 이하	100,000
	개 m ²	연면적 20m ² 초과 40m ² 이하	200,000
		연면적 4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4,000
5. 지주 이용 간판	개	연면적 1m ² 이하	5,000
		연면적 1m ² 초과 5m ² 이하	10,000
	개 m ²	연면적 5m ² 초과 10m ² 이하	20,000
		연면적 10m ² 초과 40m ² 이하의 면적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2,000
		연면적 4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4,000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위	기 준	수수료
6.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개 개 개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옥상간판에 준함	20,000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개 m ²	연면적 1m ² 이하 연면적 1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개 m ²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이하 면적 또는 연면적 5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15,000 20,000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가. 비행선 나. 비행기 · 철도차량 · 도시철도차량 · 선박 다. 사업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m ²	1.5m ² 이하 1.5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500,000 10,000 2,000
10. 선전탑		개		20,000
11. 아치광고물		개		20,000
12. 창문 이용 광고물		개		20,000
13. 입간판		개		4,000
14. 현수막 가. 건물의 벽면 현수막 나. 지주 이용 현수막 다. 지정계시대 현수막 라. 현수막 게시시설		개 m ² 개 개	20m ² 이하 20m ² 초과 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광고물 종류별 기준금액의 2분의 1	20,000 1,000 2,000 10,000
15. 벽보		매	20매 이하 20매 초과 50매 이하 50매 초과 매 50매까지 가산	5,000 10,000 10,000

광고물의 종류	구 분	단위	기 준	수수료
16. 전단		매	매 1,000매까지	5,000
17. 광고물의 게시시설			광고물의 종류별 기준금액에 준함	
18. 주소 · 성명 등 변경 (영 제9조제3항)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5,000
19. 전광류 광고물의 내용변경		건	1개의 광고물을 1건으로 산정	30,000
20. 차량탑재 영상광고		대	옥상간판(전광판)에 준함	350,000
21. 공중전화부스 이용 광고		개	1m ² 이하 1m ² 초과시 1m ² 마다 더하는 금액	3,000 1,000
22. 홍보탑 광고		개		20,000
23. 그 밖의 광고물			가장 유사한 광고물에 준함	

※ 수수료의 계산방법

1. 수수료 산정은 광고물 등의 표시면적(광고물의 테두리 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만 산정(3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입체형, 입체형문자·모형, 특수모형 등 표시면적의 계산이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수수료 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해당 수수료 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4.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별표 5]

광고물 등 안전점검 수수료 (제28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원)

광 고 물 등 의 종 류	적 용 기 준	수 수 료
1. 옥상간판과 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옥상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가로형 간판(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20㎡ 이하	22,000
	연면적 20㎡ 초과 40㎡ 이하	45,000
	연면적 4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2. 돌출간판(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15,000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22,000
	연면적 1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
3. 지주 이용 간판·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15,000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22,000
	연면적 2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500
4.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40㎡ 이하	22,000
	연면적 40㎡ 초과 80㎡ 이하	45,000
	연면적 80㎡ 초과 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
5. 그 밖의 광고물 등	가장 유사한 광고물 등에 준함	

※ 수수료의 산정방법

- (1)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한다(단순지주는 산정에서 제외).
- (2) 그 밖의 산정방법은 별표 3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별표 6]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 (제28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 수 료	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제29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현수막· 벽보·전단을 표시한 경우 가. 입간판	법 제20조 제1항제1호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4만원
- 0.6㎡ 이상 0.8㎡ 이하		24만원
- 0.9㎡ 이상 1.0㎡ 미만		3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44만원
- 1.4㎡ 이상 1.6㎡ 이하		54만원
- 1.7㎡ 이상 2.0㎡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85만원
- 2.4㎡ 이상 2.6㎡ 이하		110만원
- 2.7㎡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 는 면적의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10만원
- 0.6㎡ 이상 0.8㎡ 이하	12만원
- 0.9㎡ 이상 1.0㎡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29만원
- 1.4㎡ 이상 1.6㎡ 이하	39만원
- 1.7㎡ 이상 2.0㎡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59만원
- 2.4㎡ 이상 2.6㎡ 이하	69만원
- 2.7㎡ 이상 3.0㎡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 이상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 는 면적의 0.5㎡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10만원
- 1.1㎡ 이상 2.0㎡ 이하	12만원
- 2.1㎡ 이상 3.0㎡ 미만	14만원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24만원

- 3.8㎡ 이상 4.4㎡ 이하	28만원	라. 전단	
- 4.5㎡ 이상 5.0㎡ 미만	34만원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8천원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7천원
- 5.0㎡ 이상 6.0㎡ 이하	59만원	- 21장 이상	장당 35천원
- 6.1㎡ 이상 8.0㎡ 이하	69만원		
- 8.1㎡ 이상 10.0㎡ 미만	79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면적 10㎡ 이상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다. 벽보	중과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20조제1항 제2호
1) 일반 광고내용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5천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 21장 이상	장당 45천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 내 옥외 광고물 관련 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 록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30천원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40천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 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 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튜브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발급된 광고물 등은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 2. 3. (생략) <신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 ----- ----- ----- ----- 1. ----- -----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 2. 3.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나.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

2. 영 제20조에 따른 시 조례 제16조에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1항 관련

	<u>별표 1의 표시기간에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u>
	<u>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u>
<u>제6조 ~ 제8조 (생략)</u>	<u>제7조 ~ 제9조 (현행 제6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u>
<u>제9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u>	<u>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u> ----- ----- ----- ----- ----- ----- -----
<u>1. ~ 3. (생략)</u>	<u>1. ~ 3. (현행과 같음)</u>
<u>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u>	<u>4. ----- 종료된 -----</u> ----- ----- ----- -----

<u>5. (생략)</u>	<u>5. (현행과 같음)</u>
<u>제10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생략)</u>	<u>제11조(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u>
<u><신 설></u>	<u>④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11조 (생략)</u>	<u>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u>
<u>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u>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u>
<u>① 법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u><삭 제></u>
<u>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u>	<u><삭 제></u>
<u>③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급품·향응 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u>	<u>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u>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u>	<u><삭 제></u>
<u>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u>	<u>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 청소년 -----</u>
	<u>2.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u>

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생략)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광고물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생략)

⑥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전관리 과장으로 한다.

2.·3. (생략)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전자우편, 서면, 화상회

계획·건축·국어·디자인·조명·청소년 -----

3.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에 -----

③ (현행 제5항과 같음)

④ -----

1.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

2.·3. (현행과 같음)

4.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 임기를 적용한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화상회의,

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

제14조 (생략)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16조 ~ 제22조 (생략)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 (생략)

제25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 불

- 전자(SNS) -----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위원의 위촉 해제) -----

----- 위촉 해제-----.

1. ~ 4.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23조 (현행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와 같음)

제24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 2와 -----.

제25조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6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 3과 -----.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

-----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 증빙서류-----

참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제26조(교육의 위탁 등)①~④ (생략)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27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③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

1. ~ 4. (현행과 같음)

제27조(교육의 위탁 등)①~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8조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③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

	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 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u>별표 6</u> 과 같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 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은 <u>별표 7</u> 과 같다.

(앞쪽)

< 관계 법 규 >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입간판 수수료 및 옥외광고업 등록 변경 수수료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입간판수수료	200	200	200	200	200	1,000
	옥외광고업 등록변경수수료	75	75	75	75	75	375
	소계(a)	275	275	275	275	275	1,375
세출	○						
	○						
	소계(b)						
<input type="checkbox"/>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시	비						
구	비						
민	간						
기 타(지방채, 기금, 예치금 회수 등)							
합 계							

5. 덧붙이는 의견
6. 작성자 : 안전관리과 7급 김영하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안 제13조 관련)

제7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안 제6조 관련)

제24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도지사가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학교·도서관·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사찰·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
 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고속
 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
 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
 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
 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안 제13조 관련)

제32조(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
 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
 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
 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
 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
 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
 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
 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
 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
 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안 제28조 관련)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12.9.>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제11조 관련)

제28조(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

② 구청장은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시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 제6조 관련)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에 규제특례를 적용할 때 다른 법령에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3장제1절에 따라 규제특례를 적용받는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제의 근거법령(규제특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아 그 법령을 적용한다.

제23조(「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광고를 위하여 광고물 등(특화사업에 관한 광고물 등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류·모양·크기·색깔·표시 또는 설치방법 및 기간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